

참가계약서

▶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KISS 2018 전시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 (*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반영되오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국문)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태	종 목	
주소 ()		
전화	팩스	
홈페이지		
담당자	부서 및 직위	
휴대폰	E-mail	
출품품목		

● 신청 및 계약 내역

구분	부스단가 (부가세별도)	신청 규모		금액
조립부스	2,300,000원/부스	()m X ()m	부스	원
독립부스	1,900,000원/부스	()m X ()m	부스	원

· 1부스 : 9m² (가로 3m X 세로 3m) / 조립부스는 9m² 이상, 독립부스는 18m² 이상 시 신청 가능

· 조립부스 포함사항 : 벽칸막이, 바닥파이텍스, 업체상호간판, 스포트라이트(2), 전기(220V/1kW), 안내데스크(1), 접의자(1), 휴지통(1)

●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

담당자		휴대폰	
이메일			

· 계약금(참가비 총액의 30%)은 부스배정 완료 후 7일 이내 입금, 잔금(70%)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납부
2018년 5월 01일 이후 참가계약서 제출 시, 참가비 전액(100%)을 계약서 제출 후 7일 이내 납부

▶ 납부계좌번호 : KEB하나은행 256-890040-69604 예금주 : (주)경연전람 (송금 시 회사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의 전시회 참가규정을 수락하고 상기와 같이 KISS 2018 참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참가계약서는 팩스로 접수하여도 원본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KISS 2018 전시회 참가 규정

제 1 조 용어의 정의

- 1."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참가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신청자를 말한다.
- 2."전시회"라 함은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를 말한다.
- 3."주최자"라 함은 안전보건공단, (사)안전보호구협회, (주)경연전람을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및 계약

전시회참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전시면적 배정

- 1.주최자는 신청규모 및 참가비 납입 순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 2.주최자는 전시회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 조 전시실 관리

- 1.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해당행위 중지, 전시품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한다.
- 4.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5.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의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등에 따른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납입조건

- 1.전시자는 참가계약서를 (주)경연전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전시자는 참가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부스배정 완료 후 7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참가비의 70%에 해당하는 잔금은 2018년 4월 30일 이전에 완납을 해야 한다. 단, 2018년 5월 1일 이후에 참가계약서 제출 시, 참가비 전액(100%)을 계약서 제출 후 7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 3.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 조 해약 및 위약금

- 1.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없이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2.전시자가 참가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반드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고, 잉여시 반환한다.
 - 2018년 4월 30일 이전 취소 : 참가비의 3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18년 5월 01일 이후 취소 : 원칙적으로 전시회 참가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만일 이 기간에 전시자가 참가를 포기할 경우 전시회 참가비 전액(100%)을 주최자에게 즉시 납부
- 4.전시자가 전시계약 취소 시, 배정된 전시부스에 대해 일체 권한을 주최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 7 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 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과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9 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이 지연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전시장내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1.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 2.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3.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1 조 방화규칙

- 1.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 2.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보충규정

- 1.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2.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